

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(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작성)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입사일	퇴직일(마지막 근무일)	비고
<예>	홍길동	57.04.01	2019.01.15.	2023.02.16.	
1					
2					
3					

작성 방법

1. 지원대상 사업주: 사업적용기간(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 기간)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
가. 우선지원대상기업: 상시 근로자수 등이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서 정한 기업

나. 중견기업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

※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mme.or.kr)에서 발급한 “중견기업확인서” 로 확인

2.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아래표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대상자(매월 말일 기준 재직자)를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

사업적용기간	1년 이상~2년 미만	2년 이상~4년 미만	4년 이상
산정기간	이전 1년	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	이전 3년
산정대상 (아래 3항의 적용제외자는 제외)	만 60세 이상자 중 (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) + (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)	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	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

※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

(예시)

$$\text{평균 고령자 수} = \frac{\text{고령자의 수 합계 ['20년도(1월 말 +...+ 12월 말)+'21년도(1월~12월)+'22년도(1월~12월)]}{\text{매월 말일 현재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(3년 내내 고령자가 있었으면 36개월)}}$$

(‘23년 1분기 최초 신청, 사업적용기간 4년 이상)

②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수의 월 평균을 기재

③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(생년월일 기준)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수(아래의 사람은 제외)의 월 평균을 기재

- 사업주(법인의 대표 포함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거주(F-2)·영주(F-5)·결혼 이민자(F-6)는 포함

-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

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 수에서 ①의 평균 고령자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

※ ②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한도,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이면 한도인원은 3명

⑤ 신청금액은 ④ 증가(지원대상)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(원 이하는 버림)

처리 절차

